유럽연합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김정훈, 이중희^{1,*}, 우인성¹ 바텍안전E&C; ¹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bartec@sec-korea.co.kr*)

유럽연합은 오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신화학물질관리(REACh)법에 따라, 유럽연합 내에서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Phase in substance)에 대한 등록, 평가 및 승인을 유럽연합 내의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이 제도의 진행에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성 및 환경독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승인이 동반된다. 이는 관련 기업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비용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시장에서의 전략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REACh제도의 이행이 불가능한 국내 화학산업계에게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에게는 이 제도에의 인식과 이해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REACh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추후 작성하여야만 하는 기술서류(Technical Document), 독성연구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 등에 대한 준비 및 수행해야 하는 실험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지원방안에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전등록과 2009년 시작되는 물질정보교환포럼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에서의 협상방안에 대한 전략적인 수행계획도 포함된다. 또한, REACh 제도 관련 업무수행을 시간별 진행업무 분석 및 비용분석을 본 연구의 결과로써 제시하고자 한다.